



수도법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19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무소,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,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,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어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21년 8월 17일

국무총리 김부경

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

● 법률 제18419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표시할 수 있다"를 "표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거짓으로"를 "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3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